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에 관한 고찰*

A Therapeutic Proposal for Preventing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

성 경 숙**

Seong, Kyung-Suk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미국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처우 |
| II. 현행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와 그 문제점 | IV. 우리나라의 성범죄 전문법원의 활용 |
| | V. 나오는 말 |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은 형벌을 가중하고 신상공개, 전자감시, 성충동약물 등을 부과함으로써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엄벌주의 정책을 충실히 유지해 왔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형벌의 상향조정 및 각종 보안처분제재의 부과에 더하여 최근 보호수용제의 도입 논의는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구금 격리 위주의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에서 나아가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에 관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엄벌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던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료적 사법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법원을 활용하여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으로 삼고 있다. 성범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기존의 사건처리방식 및 양형 수단으로는 범죄의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문제해결법원의 한 유형인 성범죄 전문법원은 종래의 범죄를 사회규범에 대한 이탈로만 보고 이에

투고일 : 2014. 12. 31. / 심사완료일 : 2015. 1. 13. / 게재확정일 : 2015. 2. 3.

* 이 논문은 2014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비 제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Youngin University, Ph D.

대한 제재의 부과에 중점을 두던 시각에서 벗어나 범죄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사법적 기능을 두고 있다. 성범죄 전문법원은 성범죄자의 치료업무를 사법제도와 통합시켜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를 성공시키기 위한 다이버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사회화와 치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법원을 우리 형사사법체계 접목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치료에 초점을 두고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 치료지향적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용하여 성폭력범죄자에게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를 정기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반복적인 성범죄자의 재범을 중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치료적 사법, 엄벌주의 정책, 성범죄 전문법원, 성폭력범죄자, 형사사법시스템

I. 들어가는 말

최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범죄예방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위주로 하는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은 형벌을 가중하고 신상공개, 전자감시,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부과함으로써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이미 10여 년 전에 폐지된 (구)사회보호법상에 규정하였던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라고 일컬어지는 보호수용제도를 2014년 9월 입법예고한 상태이다.¹⁾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형벌의 상향조정 및 각종 보안처분제재의 부과 이외에도 수용처분과 같은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추진은 성범죄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통한 범죄자의 개선 내지 재사회화의 관점보다는 단순히 구금격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보호수용제의 도입이 과거 보호감호제도와는 달리 격리의 대상을 흉악범만으로 제한하고, 수용자의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의 처분이 이중처벌, 인권침해소지 등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비판의 우려를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 나아가 성범죄의 형량강화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확대는 다른 범죄로 용이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1) 보호수용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법무부는 강력범죄 발생률과 재범률이 증가하자 본격적으로 흉악범죄자 및 재범자들의 자유박탈의 형태로 격리 재교육하는 보호수용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형벌권 확대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범죄자의 개선 내지 재사회화보다는 구금격리에 초점을 둔 일련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과연 성폭력범죄에 대한 원인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이고 정당한 형사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범죄에 대한 다수의 보안처분의 중복 부과와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더하여 보호수용제도의 도입논의는 이에 따른 법 적용상의 문제점 도출과 더불어 그 효율성의 한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처벌보다는 성폭력범죄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치료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재범 방지의 필요성의 대두와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기존의 구금격리 위주의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에서 나아가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에 관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엄벌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던 미국은 1990년 이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법원인 성범죄법원(Sex Offense Courts)이나 성범죄자사회복귀법원(Sex Offender Reentry Courts)과 같은 성범죄 전문법원을 활용하여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치료적 사법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법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행 형사제재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치료적 사법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성범죄 전문법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제도 안에서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치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범죄에 효과적인 제재로써 문제해결법원의 활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현행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와 그 문제점

1. 성폭력범죄관련 형사제재와 성폭력범죄발생의 현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형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엄벌주의 형사정책적 기조를 충실히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가중에 의한 중형부과와 더불어 신상공개, 전자감시, 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보안처분이 도입되거나 기존의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1.1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보안처분을 통한 형벌가중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상향조정과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형벌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형법개정에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가중 시는 25년에서 50년)으로 상향조정되었고(형법 제42조), 사형에 대한 감경은 종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50년 이하로(형법 제 55조 제1항 제2호), 무기징역의 가석방 요건도 종래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되었다(동법 제72조 제1항). 또한 강간·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범죄의 상습범에 대해 제305조의2를 신설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성범죄를 행한 경우는 다수의 보안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우선 종전의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소아성기호중, 성적가혹증 등 성적인 성벽이 있는 정신 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하여 최장 15년간 치료감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²⁾ 이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공개대상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고, 신상정보의 공개대상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및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처벌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죄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시에 대해서도 그 대상과 감시기간을 확대하고 그 부착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치추적 전자감시를 부과하였다.³⁾ 이 법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종료 후 추가

2)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처분은 2013년 법률개정을

적인 제재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최장 30년의 범위에서 부착할 수 있으며(제5조), 가석방시 보호관찰과 함께(제22조) 그리고 집행유예 시에 보호관찰기간 동안(제28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제정되어 성충동 약물치료 및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⁴⁾

1.2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우리나라 전체 범죄발생률은 2008년을 정점으로 어느 정도 감소되는 추세이다.⁵⁾ 하지만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3년 10,365건에서 2008년 15,094건으로 무려 50%나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21,346건으로 110%나 증가하였다. 2013년 성범죄자의 전과를 살펴보면, 26,919건 중 초범 39.2%(7,408명), 재범은 60.8%(11,470명)로 나타나 재범이 높은 범죄로 나타났다. 재범 중 9범 이상은 19%(2,176명)으로 9범 이상의 전과자가 상당수 범행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통계자료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발생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처음부터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는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암수율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다. 공식적인 통계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재범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의 필요성

통해 그 대상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와 살인범죄, 그리고 강도범죄에까지 확장되었다.

- 4)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도착증 환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하면,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 5) <표 1>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범죄발생건수	1,893,896	1,829,211	1,965,977	2,189,452	2,168,185	1,917,300	1,902,720	1,944,906	2,006,682
성폭력범죄발생건수	11,757	13,573	13,634	15,094	16,156	19,939	22,034	21,346	26,919

* 자료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거듭되는 형사제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문제점

2.1 성폭력범죄에 대한 과잉형벌과 보안처분의 중복 부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된 형벌은 형법의 기본원칙인 행위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행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이며, 범죄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한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책임주의가 우리 형법의 근본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높은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넘어 강화된 형사제재로 범죄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위험한 성폭력 상습범죄자인 경우에 형벌가중은 행위자가 장래에 범죄를 다시 행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형벌에서 고려되어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안처분이 담당해야 할 예방목적을 형벌이 대신하고 있다.⁶⁾

더군다나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법규정은 이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 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과 같은 각종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일련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제도는 보안처분적 형사제재로,⁷⁾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근거하여, 치료감호, 신상등록·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수단으로, 재범의 방지 및 사회복귀의 촉진을 통해 범죄자를 재사회화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고자 한다. 이들 각각의 법률들은 비록 입법목적과 제재수단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범방지, 사회복귀, 재사회화, 국민보호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⁸⁾ 더군다나 성범죄에 대한 효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도

6)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4쪽; 고명수,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1권 제2호,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54쪽; 정웅일/김성돈,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88-189쪽.

7)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방적 성질의 목적적 조치인 보안처분적 형사제재이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결정).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등록·공개·고지를 통해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않은 보안처분을 도입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감시, 성충동약물치료, 치료감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이 범죄자에게 무분별하게 중복 부과되고 있다.⁹⁾ 예컨대,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형벌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면서 신상을 공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¹⁰⁾

2.2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와 그 판단 시기

현행법상 장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근거로, 성범죄의 심각성 및 성범죄자로부터의 각별한 보호의 요청은 재범의 위험성을 실질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은 현재의 보안처분제도하에서 성범죄자의 개별 행위속성에 따라 위험성의 경중이나 범죄별 특성에 따라 평가하여 차별적으로 보안처분을 부과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성범죄의 경우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성폭력범죄의 유형별로 차이가 인정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에게 획일적인 제재를 적용하기보다는 범죄자의 특성별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제재를 부과했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성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른 제재의 차별화가 필요하다.¹¹⁾

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의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의 판단은

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치료감호법은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한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해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성충동약물치료를 통한 재범방지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부과한다.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명령 및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수용명령 및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명수, 앞의 논문, 50-51쪽; 정웅일/김성돈, 앞의 논문, 192-193쪽)
- 10) 서울고등법원 2013.7. 26. 선고, 2013노372 판결에서는 징역 15년, 신상정보의 10년, 위치추적 전자감시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 11) 김성규, “성범죄대처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위상과 과제”,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79쪽;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여름호, 151쪽; 고명수, 앞의 논문, 51쪽; 정웅일/김성돈, 앞의 논문, 194쪽.

책임판단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판단에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¹²⁾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미래에 대한 예측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판결 확정 시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또한 중한 징역형을 부과하고 그 양형과정에서 적용했던 요소를 그대로 보안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복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추가적인 사후감독을 받는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형 집행종료 후의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나 형벌을 통해 충분히 개선된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³⁾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형벌을 통하여 충분히 개선된 경우에도 판결 시의 재범위험성의 판단을 근거로 출소 후 사후감독을 집행하는 것은 보안처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2.3 형집행 시 사법적 심사의 부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벌과 보안처분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법적 감독이 필요하다. 형벌이 과거의 책임에 지향된 정적인 형사제재라면 보안처분제도는 장래의 위험성을 다루는 동적인 형사제재이므로 그 본질상 지속적인 통제를 필요로 한다. 형집행절차에서 법원은 부과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의 종류와 기간만을 결정할 뿐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사실상 행정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에 따르면, 선고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는 가석방과 형집행 종료 이후의 보호관찰 그리고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준수사항의 변경 및 취소와 관련해서 심사기관은 행정관청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이루어

12)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집행이 판결선고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결선고시로 하여도 무방하나,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경우에는 심지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부착을 명할 수 있으므로 판결선고시와 부착명령집행시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책임판단에 재범의 위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명수, 위의 논문, 48-49쪽).

13) 예를 들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교도소에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이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형 집행종료 후의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나 형벌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시스템에서 법원이 형을 선고하고도 형집행단계에서 집행기관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선고뿐 아니라 집행에도 범죄예방의 목적과 집행과정상 발생하는 각종 권리침해와 범죄예방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¹⁴⁾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구금된 수형자에게 조건부석방, 전자감시 취소, 준수사항위반,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심사가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논란이 되는 형집행의 적정성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사법부에 의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형의 가중과 보안처분이 집중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율과 형사제재의 문제점은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구금격리 위주의 엄중한 처벌보다는 오히려 범죄 발생의 근본원인의 치료를 통하여 범죄자의 개선 및 재사회화로 하여금 재범의 예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성폭력범죄는 성향범죄로서 상습성이 높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유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처우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¹⁵⁾ 따라서 치료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제재의 결정 및 그 제재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치료적 사법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법원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Ⅲ. 미국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처우

미국은 1990년대부터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범죄 그 자체에 대한 중형선고와 부정기형의 수용처분제도(Indeterminate Civil Commitment), 그 외에 성범죄자등록과 고지법, 거주지제한규정, 그리고 GPS방식을 통한 전자감독 등 강성처벌정책에 입각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중형의지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높은 재범률과 엄격한 법률의 적용은 역효과를 낳았으며 성폭력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재통합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¹⁶⁾ 이에

14) 고명수, 앞의 논문, 52쪽; 김태명, 앞의 논문, 38-39쪽.

15) 김혜정,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 개정내용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소식, 2013년 겨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쪽.

따라 성범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는 형벌만으로는 범죄의 반복을 차단하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정책적으로 처벌 외에 치료나 개별화된 처우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 치료적 사법과 문제해결법원의 등장

기존의 전통적 형사사법제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에서 학문적으로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과 제도적으로는 문제해결 법원(Problem-Solving Courts)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이 등장하였다.

1.1 치료적 사법의 이념

치료적 사법은 무엇이 올바른 처벌인가, 무엇이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인지에 관하여 접근을 한다.¹⁷⁾ 치료적 사법은 치료주체로서의 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서, 지역사회 내의 개인의 감정적 웰빙과 심리적 필요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관한 영향을 주는 치료수단으로서의 형사사법을 제안한다. 치료사법은 법과 제도가 치료적 혹은 반치료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적 효과를 증가시키고 반치료적 효과를 감소시키도록 법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치료적 사법은 법을 행동과 결과를 양산하는 사회적 힘으로 보고, 치료자로서의 법을 모색하기 위해 법과 더불어 심리학, 정신의학, 행동과학, 범죄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의 연구를 접목시켜 학제적으로 접근한다.¹⁸⁾ 이를 통하여, 심리학이나 행동과학의 여러 기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행동변환프로그램에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자기변혁을 행하고 규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문제의 원인을 해결하

16) Heather Ellis Cucolo/Michael L. Perlin, "preventing sex-offender recidivism through therapeutic jurisprudence approaches and specialized community integration", *Temple Political & Civil Rights Law Review*, Vol. 22, 2012 Fall, 5쪽.

17) David B. Wexler/Bruce J. Winick, *Law in a Therapeutic Key: Recent Developments in Therapeutic Jurisprudence*, at xviii-xix, 1996; David B. Wexler, *Two Decad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24 *TOURO L. REV.* 17, 17, 2008; David B. Wexler,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From Theory to Practice*, 68 *Rev. Jur. U.P.R.* 691, 693, 1999.

18) Ian Freckelton, *Therapeutic Jurisprudence Misunderstood and Misrepresented: The Price and Risks of Influence*, 30 *T. JEFFERSON L. REV.* 575-580쪽, 2008.

고자 한다. 따라서 치료적 사법은 피고인에게 문제해결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및 법원과의 협력적인 결정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법시스템의 전후사정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한다.

치료적 사법은 정의나 적법절차와 같은 다른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는 한 법이 좀 더 치료적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¹⁹⁾ 따라서 전통적인 사법이론의 틀 안에서 기존의 수단으로는 범죄의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특정 분야에 새로운 접근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범죄행동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여부를 감시함으로써 피고인을 치료하여 재사회화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치료적 사법의 원리는 문제해결법원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형사사법 분야에서 문제해결법원과 실천적으로 결합하여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모델 내지 해결수단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1.2 치료적 사법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법원

치료수단으로서의 형사사법을 제안한 치료사법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문제해결법원은 성범죄, 약물남용 및 정신질환 범죄인 등에 대한 전통적인 사법처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상의 감독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98년 설립된 플로리다 데이드카운티(Dade County) 약물법원을 시작으로 문제해결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처벌보다는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독, 범죄, 구금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시도에서 나타났으며, 현재 미국 전역에는 수많은 유형의 문제해결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²⁰⁾

문제해결법원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건이 문제해결법원에 들어오면 판사는 전통적인 구금형 대신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문제해결법원은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주의적 절차를 통하여 법적 결과를 도출하는 전통적인 재판과는 달리, 사법적 권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행결과에 대한 엄격한 사후점검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동

19) David B. Wexler, *Not Such a Party Proper: An Attempt to Accommodate (Many of) Professor Quinn's Concerns About Therapeutic Jurisprudence Criminal Defense Lawyering*, 48 B.C.L. REV. 597, 599, 2007.

20) 약물법원모델의 성공은 이후 미국 전역에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치료법원, 가정폭력법원, DUI법원, 소년법원, 조세법원, 음주운전법원 등의 법원들의 설립·운영을 이끌었으며, 약물법원의 경우만 2009. 12. 31. 2459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²¹⁾ 문제해결법원은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판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절차를 통해 치료적 효과를 거두고, 외부기관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법원에 집중하고, 피고인의 치료과정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며, 판사와 피고인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법원이 지역사회의 원조에 적극적이며, 판사가 법원 내외에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람 지향적인 개별적 접근으로 개별화된 처우를 통한 재사회화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²²⁾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치료적 사법 이념과 문제해결법원은 실천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형사정책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치료지향적 프로그램과 제도가 결합하여 치료적 형사정책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가는 중이다.²³⁾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문제해결법원: 성범죄 전문법원

2.1 성범죄 전문법원으로 ‘성범죄법원(Sex Offense Courts)과 ‘성범죄자 사회복귀 법원’(Sex Offender Reentry Courts)

2.1.1 뉴욕의 성범죄법원(Sex Offense Courts)

뉴욕의 성범죄법원은 2005년 시행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뉴욕에는 8개의 성범죄법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총 4,137건에 걸친 사건들을 심리하였다.²⁴⁾ 성범죄법원은 장래의 범죄자화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²⁵⁾

21) Greg Berman/John Feinblatt, “Problem Solving Courts: A Brief Primer”, *Law and Policy*, Vol. 23, No. 2, 2001.

22) Donald Farole Jr. et al., *Applying Problem-Solving Principles in Mainstream Courts: Lessons For State Courts*, 26 JUST. SYS. J. 57, 68, 2005.

23) 김한균/조의연, “치료적 사법 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1-22쪽.

24) Center for Court Innovation, 2010 www.courtinnovation.org 뉴욕은 1996년 개설된 CCI(Center for Court Innovation)라는 단체가 뉴욕의 문제해결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뉴욕은 Oswego, Nassau, Westchester, Suffolk, Erie, Orange, Queens, 그리고 Tompkins 카운티에서 성범죄법원을 운용 중이다.

25) Kathryn Sammon, “Therapeutic Jurisprudence: An Examination of Problem-Solving Justice in New York”, 23 *St. John's Journal of Legal Commentary*, 965, 2008.

성범죄법원은 성범죄의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 가능한 조기에 개입하며, 피고인이 체포되는 순간에 피고인을 위해 치료하고 간섭하는 기회가 활용된다. 다른 유형의 문제 해결법원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성범죄법원은 자율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다. 뉴욕주의 성범죄등록법에 등록되는 모든 중범죄 수준의 성범죄사건이 그 대상이 된다.²⁶⁾ 판사, 검사, 변호사, 피해자 옹호자, 보호관찰관, 가석방담당자, 거짓말탐지기 검사자, 정신건강치료제공자, 그리고 심리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일원은 성범죄자가 어떤 유형의 중재와 다이버전이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²⁷⁾ 판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치료법원팀은 매주 또는 매달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개별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프로그램의 실시여부를 점검한다.²⁸⁾ 법원은 또한 피고인과의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료와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여부와 효과 및 지역사회감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준수와 비준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제재를 부과한다. 궁극적으로는 치료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석방을 추구한다.

성범죄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평가에 기반을 두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을 관리한다. 법원과 치료법원팀의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 관리는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초기 중재, 평가와 정보공유, 피고인 중심의 개별화된 치료의 성취결과로 인한 재범과 재감금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장기간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²⁹⁾

2.1.2 콜로라도의 성범죄자 사회복귀법원(Sex Offender Reentry Courts)

성범죄자 사회복귀법원은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수형자나 수용치료 이후 지역사회

26) Donald Farole et al., *Applying Problem-Solving Principles in Mainstream Courts: Lessons for State Courts*, 26 JUST. SYS. J. 57, 57, 2005.

27)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Mission and Goals of Sex Offense Courts, <http://www.nycourts.gov/courts/problem_solving/mh/home.shtml>

28) Suzanne Cecala/Mary Walsh, *N.Y. State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New York State's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Systems and Service Making a Difference* 1, 8, 2006, <http://www.opdv.state.ny.us/about_dv/nyresponse/nysdv.pdf>

29)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뉴욕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과 치료의 일부로 이용되며 성범죄자에게 위험한 행동을 숨기지 못한다는 확신을 준다. *United States v. Johnson*, 3d, 2006 WL1148514 1-2, 6(C.A.2(N.Y.))

에 (가)석방되는 수형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법원이다. 성범죄자 사회복귀법원(또는 재진입법원)은 보석심사부터 조건부석방까지 성폭력범죄의 사건을 다루면서, 성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에 중점을 둔다.³⁰⁾ 다른 유형의 문제해결법원과 같이 판사는 관련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성범죄자 사회복귀팀’의 재진입 관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³¹⁾

여기서도 뉴욕의 성범죄법원과 같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재진입법원의 절차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³²⁾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통상 통계학적 판단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범죄자는 엄격한 치료가 부과된 지역사회로의 조건부 석방이 허용되며 재진입법원은 이때 감시의 수준과 범죄자의 석방을 통제한다. 재진입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와 사회복귀 관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감독하면서,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무준수의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등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한다. 만일 범죄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위험 행위를 보여준다면, 법원은 추가적 치료기간의 연장이나 지역사회로의 석방의 취소 혹은 교도소로의 이송까지 다양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에 프로그램에의 성공적인 이수는 단계적으로 석방 과정이 적용된다.

재진입법원은 감금보다는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보다 목표지향적이며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라는 장점이 있어 대중이 만족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순응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보다 관대한 자유제한적 제재를 얻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성범죄자들의 개선은 장려된다.³³⁾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순응에 따른 형의 변경가능성을

30) Madeline Carter, Kurt Bumby & Thomas Talbot, “Promoting Offender Accountability and Community Safety Through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Sex Offender Management”, 34 Seton Hall L. Rev. 1273, 1275-76, 2004; Kim English, The Containment Approach to Managing Sex Offenders, 34 Seton Hall L. Rev. 1255, 1259-60, 2004.

31) John La Fond & Bruce Winick, “Sex Offender Reentry Courts: A Proposal for Managing the Risk of Returning Sex Offenders to the Community”, 34 Seton Hall L. Rev. 1173, 1196, 2004.

32) 주기적인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범죄자의 성범죄전과와 수법, 선호하는 피해자 유형과 범행패턴, 비정상적인 성적 자극과 행동의 빈도, 재범행을 촉발시키는 감정적 상태 등 사건과 관련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험관리와 치료에 도움을 준다. 범죄자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얻음으로써 재범의 기회와 피해자에게는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별 범죄자에게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정된 감독과 감시 계획에 정보를 제공한다. 주기적인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범죄자의 고위험 재범 가능성을 단념시키는 기능을 한다(Kim English et al., Community Containment of Sex Offender Risk: A Promising Approach, in PROTECTING SOCIETY, 262쪽).

33) Bruce Winick 교수는 “우리는 범죄자의 범죄극복을 위한 시도와 지역사회 서비스에 연루되기 위한 노력

알고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함과 동시에, 준수의 위반 시 재수감과 같은 법원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성범죄자의 확립된 일탈행위와 환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2.2 성범죄 전문법원의 위험관리와 그에 따른 분류처우

2.2.1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기반을 둔 위험관리전략

네브라스카(Nebraska)주의 경우는 이전의 범죄행위와 장래의 위험성에 기반을 둔 위험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³⁴⁾ 네브라스카주의 평가기준은 교도소에서의 (가)석방 시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감독의 요건과 지역사회등록 수준을 결정한다.³⁵⁾

평가자는 성범죄자의 과거 범죄행위와 석방 시 그의 정신심리학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네브라스카의 평가도구에 따라 1(낮음), 2(중간), 3(높음) 중 하나의 위험레벨로 평가한다.³⁶⁾ 여기서 평가자는 치료와 상담 등과 같은 석방 시 조건을 부과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고려한다.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내 석방 시 위험평가 결과는 위험수준에 따라 공개된다. 만일 범죄자가 1수준으로 결정된다면, 법적용자만이 해당

을 보상하고 격려해야만 한다. 현대 성범죄자는 보상의 가능성이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한다 (Heather Ellis Cucolo/Michael L. Perlin, 앞의 논문, 111쪽).

34) 그동안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통계학적 방법이 주된 기반이 되었으나, 통계학적 예견은 일련의 성범죄자의 분류에 관한 위험의 범위만을 확인하고, 그 그룹에 관한 자신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그룹에 속한 개개인의 위험성과 개인의 성적 행위에 관한 심리학적 통찰력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John La Fond & Bruce Winick, 앞의 논문, 1179쪽).

35) Caleb Durling, “Never Going Home: Does It Make Us Safer? Does It Make Sense? Sex Offenders, Residency Restrictions, and Reforming Risk Management Law”,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Fall 2006, 349-350쪽.

36) 네브라스카 대학의 법심리학 교수인 Mario Scalora 교수와 주당국은 1,300여명의 성범죄자를 추적하여 범죄자가 지역사회로 석방될 때 어떤 요소들이 재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다. 도구는 범죄자의 위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들에 무게를 두었다. ① 성범죄자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행위로 성격지어지는지의 여부, ② 성범죄자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행했는지의 여부, ③ 성범죄자가 무기, 폭력, 혹은 중상해의 고통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④ 범행횟수, 날짜, 그리고 이전 범행의 유형, ⑤ 심리학적·정신의학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시사하는지의 여부, ⑥ 성범죄자의 치료에 대한 반응, ⑦ 최근 사람에 대한 성범죄자의 위협이나 혹은 추가적 범죄를 행할 의도의 표현, ⑧ 감금 시 성범죄자의 행위가 그것이다. 이외에 주기적으로 고령이거나 혹은 심신미약의 원인된 질병의 두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의 존재는 자동적으로 범죄자를 1(낮음)수준으로 평가한다. 반면에, ① 사망의 고통이나 혹은 피해자의 고문이나 불구, ② 피해자를 다른 지역으로의 유괴와 강제적인 이동, ③ 성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재범의 위협, 그리고 ④ 위험에 대한 최근 임상적 평가의 4개 지표 중의 하나의 존재는 성범죄자의 위험을 자동적으로 3(높음)으로 결정한다(Slansky v. Neb. State Parol, 685 N.W.2d 342-344 쪽).

범죄인의 위치를 고지받는다. 만일 2수준이라면, 학교 근처, 데이케어 센터 근처, 그리고 종교단체와 청소년단체는 범죄자의 신원을 고지받는다. 만일 3수준이라면, 성범죄자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지된다.³⁷⁾ 재범위험성 평가의 기준은 낮고 중간정도의 위험을 지닌 성범죄자는 적절한 제재로 지역사회에 살면서 의무적인 시설 외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반면, 높은 위험을 지닌 범죄자는 교도소의 구금이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³⁸⁾ 게다가 위험평가는 한 번이 아닌 주기적인 독립 심사를 통하여 절차적 안전장치를 부과한다.

이와 같은 위험평가는 그동안 문제되었던 장래 위험을 예측하는 데 정확하지 않다는 우려와 모두에게 획일적인 처벌을 부과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성범죄자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한 것이다.³⁹⁾ 게다가, 위험 평가 기준의 이용과 이에 따른 개별 맞춤된 제재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대다수 성범죄자에게는 최소한의 제재를 부과하여 사회 내로 재통합을 하는 반면에, 고위험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성범죄자에게는 주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위험관리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단순한 예방보다는 효과적이다.⁴⁰⁾ 위험관리는 최첨단 통계도구와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형선고 시 개개 성범죄자에 대한 최초의 위험평가를 요구하고, 지역사회 내 가석방 시 주기적인 위험평가를 통하여 범죄자에 관한 통제를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나아가 위험관리 전략을 통하여 범죄자는 지역사회 내 엄격한 감독과 치료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성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지역사회의 보호에 도움을 준다.

37) Debra Goldstein/Stephanie Goldstein, "Sex Offender Registration & Notification: The Constitution vs. Public Safety", 60 Ala. Law. 112, 118, 1999.

38) 재범의 위험평가의 기준에 대한 일부 비판이 존재한다. 네브라스카의 위험평가 도구는 법원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이전 범행에 비례하여 장래 제재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일 위험평가의 기준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 고정적 위험 요소들(이전 범행과 일탈적인 성적 선호도와 같은)에 중점을 둔다면, 범죄자는 성공적인 발전이나 재사회화를 완성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제재를 감경할 기회는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적 위험 요소들(성적일탈, 동년배 그룹 모임, 성행위에 대한 인지적 왜곡과 일탈적 성적 환상의 현존, 친밀함의 어려움)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LeRoy Kondo, *The Tangled Web: Complexities, Fallacies and Misconceptions Regarding the Decision to Release Treated Sexual Offenders from Civil Commitment to Society*, 23 N. Ill. U. L. Rev. 202, 2002).

39) Caleb Durling, 앞의 논문, 353쪽.

40) Bruce Winick, *Sex Offender Law in the 1990s: A Therapeutic Jurisprudence Analysis*, 4 PSYCHOL. PUB. POL'Y&L. 558-65, 1998; 성범죄법원의 사법적 감독과 관리는 성범죄자 스스로 이들이 감시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법원, 그리고 보호관찰관에 의한 계속적인 관리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재범행의 단념과 동시에 역으로 성범죄자는 어딘가에서 살아갈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2.2.2 위험관리전략에 따른 성범죄자의 단계적 분류처우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 부과의 본질적인 목적은 재범의 방지와 범죄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이다. 재진입법원의 범죄자들은 지역사회로 석방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확신할 때까지 밀접한 감시와 감독을 받는다는 석방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감독하 석방은 이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를 동반해야만 한다.

성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호와 범죄자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재진입법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다. 여기서 재범위험은 주기적인 위험 평가를 통해서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감독되며 성범죄자는 점진적으로 교도소나 수용처분에 따른 치료감호기관으로부터 부분적인 석방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석방으로 이동된다. 예를 들면, 범죄자는 1단계로 교도소로부터 외부통근제도로 사회적 처우를 착수하고, 그리고 2단계로 구조화된 제재와 함께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로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3단계로 부분적 가택구금(Partial Home Confinement)이나 혹은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하에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이와 같은 제재들은 용이해지며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이와 같은 과정은 성범죄자의 치료 참여, 주기적인 위험의 재평가, 집행유예나 가석방 전문위원에 의한 개개인의 감독과 밀접한 관리를 요청한다.⁴¹⁾

문제해결법원에서 판사의 직접적인 참여와 범죄자와의 상호작용은 재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을 만든다. 전문법원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에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가져오기 위해서 교도소로부터 (가)석방된 가해자를 돕도록 기안되었다.⁴²⁾ 이와 같은 법원은 사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강화와 단계별 제재를 적용하고 범죄자가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안된 지역사회 내 치료와 그 이외의 다른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다룬다.

3. 성범죄 전문법원에 대한 평가

문제해결법원의 하나로 치료적 이념에 기반을 둔 성범죄법원이나 성범죄자복귀법원(또는 재진입법원)은 종래의 범죄를 사회규범에 대한 일탈로만 보고 이에 대한 제재에

41) John La Fond & Bruce Winick, 앞의 논문, 1189쪽.

42) Terry Saunders, *Staying Home: Effective Reintegration Strategies for Parolees*, 41 JUDGE's J. 34, 2002.

중점을 두던 시각에서 벗어나 범죄를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에 사법적 기능을 두고 있다. 성범죄 전문법원은 성범죄자의 치료업무를 사법제도와 통합시켜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를 성공시키기 위한 다이버전으로써의 역할을 한다.⁴³⁾

전문법원은 판사와 팀의 도움으로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가능한 조기에 개입하여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출석을 요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판사는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통하여 치료계획에 따라 직접적으로 피고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법원과 같은 전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책임을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함과 동시에, 빈번한 법원의 출석을 통해 치료과정의 순응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위험평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보상이나 제재를 부과한다. 성범죄 전문법원의 성공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재범을 중단하고 재사회화를 돕는다는 점과 지역사회 내의 성공적인 재통합은 장기간 주의 재정을 절약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범죄자를 다루기 위한 전문법원제도의 수립과 중재팀을 구성하고, 판사와 변호사 등을 교육하기 위한 엄청난 재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법원의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중립적인 판사에서 문제해결법원 내 판사의 역할과 강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의 의존은 여전히 사법시스템 내의 신뢰성과 적절한 역할에 회의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해결법원은 기존의 전통적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치료프로그램을 거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제도에 불과하며, 굳이 문제해결법원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집행유예제도의 보완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⁴⁾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법원이 제안하는 바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

43) 과연 치료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논란에서, 치료가 성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킨다는 충분한 연구의 부족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반면, Hanson 외 위원회는 9,454명의 성범죄자를 평균 4~5년간 연구한 결과로 재범을 감소시키는 데 인지행동과 같은 정신의학적 치료는 효과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는 성범죄자가 보다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고 지역사회 내 치료가 기관의 치료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과 지역사회의 치료에 참여하도록 성범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한다(John La Fond & Bruce Winick, 앞의 논문, 1181-1184쪽).

44) 문제해결법원도 범죄자가 공동체에 거주하는 동안 감독과 특정한 치료를 부과하며, 범죄자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 돌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범죄자가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시행해 온 집행유예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를 대체하거나 전면적으로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분야의 범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재범은 불가피하며 기존의 사건처리 방식이나 제재로는 범죄의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범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와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미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에서 시행된 집행유예제도가 존재함에도 문제해결법원의 등장은 기존의 집행유예제도가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⁴⁵⁾

실질적으로 미국은 치료적 사법과 문제해결법원의 운용을 통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자의 재사회화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⁴⁶⁾ 문제해결법원은 성범죄와 같이 당사자주의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인정 후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장하여 형선고 절차에 유연성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성범죄법원은 성폭력범죄자의 대책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해결법원의 성범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 전략은 처벌에 있어 단계별 등급화된 접근과 융통성 있는 형량의 조정 및 주기적인 위험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대다수 범죄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여 사회 안으로의 재통합을 격려하는 반면에, 소수의 고위험성 범죄자에게는 자원과 정책을 집중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는 목적을 성취한다.

IV. 우리나라의 성범죄 전문법원의 활용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성범죄의 재범예방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은 엄벌 정책을 충실히 유지해 왔지만, 성범죄에 있어서 꾸준한 재범률의 증가와 전자장치의 부착 등과 같은 형사제재의 부과에 더하여 최근 보호수용제의 도입 논의는 성범죄가 단순히 구금격리 위주의 엄격한 처벌만으로는 그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형사제재의

45) 문제해결법원에 대한 비판은 기존의 집행유예제도를 통하여 문제해결법원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행유예는 그 시점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점 및 그 관리자가 보호관찰관인 점에서 문제해결법원과 접근방법을 달리한다(정정미, “미국양형제도의 변화와 문제해결법원의 발전”, 사법연수원교수논문집:청년논총, 제7집, 사법연수원, 2010, 500-504쪽).

46) Daniel Fetsco, 앞의 논문, 592-594쪽.

적용에 있어서도 과도한 형벌과 다수의 보안처분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제한 없이 부과될 수 있는 점과 성범죄의 경우에 그 유형과 행위자의 속성에 따른 재범위험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제재의 부과는 또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의 성과를 획득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의 치료를 통하여 범죄자의 개선 내지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으로 치료적 사법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법원인 성범죄 전문법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에 들어 이른바 치료적 사법과 문제해결법원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소개되었으며,⁴⁷⁾ 범죄의 원인이 약물남용, 각종 정신장애, 가정폭력 등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접근하여 법원이 근본적인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⁴⁸⁾ 문제해결법원이 제안하는 성범죄전문법원은 성범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있어서 기존의 사건처리방식 및 양형 수단으로는 범죄의 근원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⁴⁹⁾ 성범죄의 경우는 성범죄자의 범죄사실의 완강한 부인과 축소회피와 같은 인지적 왜곡이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이와 같은 인지적 왜곡에 대한 치료는 인지적 재구성을 통하여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이다.⁵⁰⁾ 여기에는 일정한 법원의 강제성이 필요하며, 그 강제성이 적법하고 적정한 근거를 판사의 권한에서

47)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으로 문제해결법원과 같은 법원운용시스템이 일부 개별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가정법원의 기능이 법적 후견을 넘어 후견적·복지적 차원의 치료적 사법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의 개원과 형사제재 범상의 개혁방안 속에 치료적 사법이념의 실천적 요소를 양형의 대안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48) 김상규, “문제해결법원-미국 뉴욕의 예를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김한균/조의연, “치료적 사법 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1권 16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대법원,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上)”,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사법발전재단, 2008; 이승호,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이승호,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벌의 기능”,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12; 조의연, “캐나다 약물법원-토론토 약물치료법원을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49) 문제해결법원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대상 영역의 선정은 해당 영역의 법위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고, 형사사법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야여야 하며, 그리고 형사사법, 특히 법원이 해당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이승호, 위의 논문, 76-78쪽).

50) 김한균/조의연, 앞의 책, 162-163쪽.

도출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강제적 권한을 이용한 치료가 결합된 문제해결법원의 논의가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1. 기존의 우리 형사사법제도와의 접목

기존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제도와 문제해결법원은 모두 재범의 방지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문제해결법원은 목적 달성에 있어서의 법원의 역할과 그 수단의 선택에서 실천적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고, 전통적인 법원의 역할에서 나아가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한다.⁵¹⁾

성범죄법원과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와의 접목은 앞서 언급된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제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⁵²⁾ 즉,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적 처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근본원칙으로 성범죄의 해결방법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자의 치료이어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처분을 사법작용으로 포섭하여 치료과정 전반을 법원이 주도해야 한다.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전과나 죄질 등의 특성에 따른 다른 단계를 통하여 각기 다른 양형수단과 개별화된 제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중복적인 다수의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을 통합하는 하나의 제재로서, 법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 및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두어 종합적으로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현행법하에서 법원에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형심리에 치료적 사법을 고려하는 시도로, 공판절차 내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법원이 양형심리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치료 프로그램의 참가를 사실상 권고 내지 명령하고, 주기적인 법원 보고와 출석을 통해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양형심리를 속행하거나 형선고를 미루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선정, 치료계획 및 치료일정의 수립, 치료경과의 확인과 같은 치료 프로그램 시행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감독함으로써 성범죄법원의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이행할 수 있다. 더불어 피고인의

51) 정정미, 앞의 논문, 498쪽.

52) 성범죄 전문법원은 기존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약물치료법원을 모델로 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논의와 유사한 원칙과 방식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Daniel Fetsco, "Reentry Courts: An Emerging use of Judicial Resource in the Struggle to Reduce the Recidivism of Released Offenders", *Wyoming Law Review* 2013, 594쪽); 이하에 도입방안은 조의연, "한국형 약물법원의 모색", 2013년 한국형사법학회·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추계공동학술회의 자료 참조.

치료의지, 치료 성과,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 등을 충실히 심리하여 양형인자로 적극 고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⁵³⁾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에 치료관련 의무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법원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의 속성상 법원이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 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감독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집행유예 부수처분 중 치료명령의 집행방법에 특칙을 두어 보호관찰 기간 중 법원에 치료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치료 완료를 법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⁵⁴⁾

또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심사의 부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법원이 사법적 권한을 이용하여 형선고 이후의 피고인의 정상에 관심을 가질 제도적 장치로서 문제해결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⁵⁵⁾ 법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관리 프로그램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방안이다.

2. 성폭력범죄 관련 전문법원의 설립

성범죄법원을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전문법원은 형벌의 반복만으로는 재범의 예방이 어려운 범죄자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형태의 이른바 법원의 전담재판부를 활용하는 것이다.⁵⁶⁾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53) 성범죄법원의 운영 측면에서 물론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치료 대상자의 성실성과 사회 내 치료자원도 중요하다. 치료프로그램의 구체적 시행 과정에서 법원 내 조사관과 전문심리위원 등의 기존 인력을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화나 정상증인, 법원 조사관 또는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자료 조사를 통해 치료의 성공여부를 면밀히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조의연, 한국형 약물법원의 모색, 83쪽 인용).

54) 김한균/조의연, 앞의 책, 108쪽.

55) 현행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치료감호를 제외하고는 치료적 사법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 치료 후 중구처분’의 구조는 실현할 수 없다. 특히 판결 선고 단계에서는 실행과 집행유예의 양자택일만이 가능하고, 법원이 형선고 이후의 정상에 관심을 가질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고명수, 앞의 논문, 51-53쪽).

56) 문제해결법원은 먼저 법원조직상의 하드웨어적인 법원(이른바 국법상 의미의 법원)을 상정하지만, 복미의 문제해결법원은 대체로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라기보다는 법원과 병원, 민간단체가 네트워크화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에 치료 관련 사건의 전담부를 두고 법원이 지정한 전담병원과 협력으로 치료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방지와 치료의 효과에 대한 그 실효성이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전담법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 전담법원은 성범죄의 형사사건에 있어 양형심리에서 판결 선고와 형의 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의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치료사법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전과나 죄질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단계를 적용하여 각기 다른 제재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성적정신이상으로 인한 성범죄인 경우는 지금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를 부과한다. 초범이나 집행유예에 처해질 정도의 사건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치료명령을 하고 치료경과 및 결과를 참작하여 최종 양형을 하는 방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수여부를 법원출석 및 정기적 보고를 통해 직접 감독하는 방법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모델은 뉴욕의 성범죄법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죄인 경우는 교도소 복역과 그에 따른 가석방 시 지역사회 내 감독과 치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향후 성범죄자 사회복귀법원의 운영이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나오는 말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으로는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치추적 전자장치법, 성충동약물치료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성충동약물치료 등 강력한 성폭력범죄 대책들을 연이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제재의 부과에 더하여 최근 보호수용제의 도입 논의는 기존의 범죄자에 대한 구금격리 위주의 엄중한 처벌 부과로만은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불어 현행 형사제재의 적용에 있어서도 과도한 형벌과 다수의 보안처분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제한

된 합의제 정도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에 해당)을 의미한다(조의연, 캐나다의 약물법원, 223쪽).

없이 부과될 수 있는 점과 성범죄의 경우에 그 유형과 행위자의 속성에 따른 재범위험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제재의 부과는 또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의 성과를 획득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에 대한 구금격리 위주의 엄벌주의 형사사법정책에서 나아가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에 관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의 치료를 통하여 범죄자의 개선 내지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치료적 사법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해결법원인 성범죄 전문법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성범죄 전문법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의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사법적 통제와 감독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자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고 그들을 재사회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 치료적 지향적 문제해결법원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치료에 초점을 두고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 치료지향적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용하여 성범죄자에게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법관을 중심으로 치료전문가와 보호관찰관 등이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성범죄자의 재범을 중단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학술지

- 고명수,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1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9-66쪽.
- 김성규, “성범죄대책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위상과 과제”,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61-80쪽.
-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5-44쪽.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여름호, 147-174쪽.
- 김한균/조의연, “치료적 사법 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136쪽.
- 이승호,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51-82쪽.
- 이승호,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12, 63-93쪽.
- 정정미, “미국양형제도의 변화와 문제해결법원의 발전”, 사법연수원교수논문집: 청연논총, 제7집, 사법연수원, 2010, 461-504쪽.
- 정웅일/김성돈,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85-210쪽.
- Daniel Fetsco, “Reentry Courts: An Emerging use of Judicial Resource in the Struggle to Reduce the Recidivism of Released Offenders”, *Wyoming Law Review* 2013, 591-613쪽.
- Greg Berman and John Feinblatt, “Problem Solving Courts: A Brief Primer”, *Law and Policy*, Vol. 23, No. 2, 2001, 125-140쪽.
- Heather Ellis Cucolo/ Michael L. Perlin. “preventing sex-offender recidivism through therapeutic jurisprudence approaches and specialized community integration”, *Temple Political & Civil Rights Law Review*, Vol. 22, 2012 Fall, 1-42쪽.
- Caleb Durling, “Never Going Home: Does It Make Us Safer? Does It Make Sense? Sex Offenders, Residency Restrictions, and Reforming Risk Management Law”, *Journal of Criminal Law of Criminology* Fall 2006, 317-363쪽.

John La Fond/Bruce Winick, “Sex Offender Reentry Courts: A Proposal for Managing the Risk of Returning Sex Offenders to the Community”, *34 Seton Hall L. Rev.* 1173, 1196, 2004.

Kathryn Sammon, “Therapeutic Jurisprudence: An Examination of Problem-Solving Justice in New York”, *23 St. John’s Journal of Legal Commentary*, 923, 969, 2008.

[Abstract]

A Therapeutic Proposal for Preventing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

Seong, Kyung-Suk*

Enraged by sex crime against young children committed by convicted sex offenders, the public has demanded that government do whatever is necessary to prevent sexual recidivis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aggressively used the statutes to prevent sex offenders from committing more sex crime. They have dramatically increased sentences for repeat offenders, including serious sex crime.

However, our existing approaches for dealing with sex offenders are flawed. They fail to incarcerate some sex offenders who are dangerous for the community. Rather than fostering the rehabilitation of sex offenders, they often produce psychological pressures that are antitherapeutic. Thus, we propose the use of special sex offender reentry courts or sex offense courts to manage the risk that sex offenders will reoffend and to motivate them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rehabilitative programs.

The traditional criminal system fails to address the underlying problems that cause recidivism. An array of innovative courts have emerged throughout the country in an effort to address the underlying problem of sex crimes. Therapeutic Jurisprudence can be regarded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problem-solving courts and approaches. These courts adapt their processes to suit the sources of the problems, which are driving the actions that bring the wrongdoer to court in the first place. Sex offender courts, which are based on principl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can provide more intensive community supervision for a much larger group of sex offenders, while at the same time motivating them to change their attitudes and behavior. In addition, sex offense courts is to improve public safety by preventing future victimization.

* Assistant Professor,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in Youngin University, Ph D.

The therapeutic approach on sex offenders through sex offense courts and sex offender reentry courts can be successful in addressing sex offender assessment, treatment, and management so long as the focus rests on both community and offender rehabilitation. As a result, our existing flawed strategies should be modified or replaced by a scheme that borrow from the best practic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problem-solving courts.

[Key Words] Therapeutic Jurisprudence, Martinetism, Sex Offense Courts, Sex Offender, Criminal Justice System